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저축은행 특별계정과 구조조정

□ 저축은행 부실처리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기금 내 특별계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됨.

- 동 개정안은 예금보험료의 일부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예금보험기금 내 ‘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’을 설치하고 기존 권역별 계정에 납부하던 보험료 중 45%를 특별계정에 납부하도록 규정함.
- 특별계정 운영은 저축은행 부실이 해소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며, 청산 시에는 잔여재산 중 정부 출연분만큼 우선 국고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특별계정에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따라 각 권역별 계정으로 귀속시키도록 함.

□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마련됨에 따라 특별계정의 자금 확보를 위한 사전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- 저축은행 계정의 5조 6천억원 적자 중 올해 들어 상호저축은행(현 우리금융저축은행) 매각에 투입된 자금과 7개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금 등 2조 8천억원의 적자분을 특별계정에 편입시킴.
- 정부는 구조조정에 쓰일 자금의 추가 확보를 위해 8개의 은행에서 조달된 3조원의 신용공여한도를 기반으로 최대 10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직접차입 방식의 금융권 입찰을 준비 중에 있음.
- 금감원은 부실 저축은행 7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이미 끝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사전통지 및 경영개선계획 제출요구를 하거나 추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.
- 아울러 자구계획 이행기간이 보통 2개월이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를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, 자구노력 이행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 곧바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음.
 -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매각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됨.

(저축은행 특별계정 가동, 한국경제, 4/6)